

## 1. 개정이유

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내 일부 부서 간 사무분장의 일부 조정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무분장의 조정(안 제4조)

현재 인력 현황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전세피해조사과와 조사지원팀 간의 조사관할 범위를 조정함.

### 나. 기타 정원표의 수정(별표)

정원표 하단 별도정원 외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에 관한 비고 문구 삭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행정예고 생략(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제1항제3호)

##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”를 “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지역”을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지원단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.

[별표]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정원(제3조제3항 관련)

구 분		계	고위(나)	4급	4.5급	5급	6급 이하
계	정 원	35	1	2	1	11	20
	(별도정원)	(12)	(1)	(2)	(1)	(6)	(2)
단 장	정 원	1	1				
	(별도정원)	(1)	(1)				
피해지원 총괄과	정 원	11		1		4	6
	(별도정원)	(4)		(1)		(3)	
전세피해 조사과	정 원	15		1		5	9
	(별도정원)	(3)		(1)		(1)	(1)
조사지원팀	정 원	8			1	2	5
	(별도정원)	(4)			(1)	(2)	(1)

※ 별도정원 5급 6명 중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, 6급 이하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각각 충원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무분장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전세피해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<u>서울특별시 · 인천광역시 · 경기도</u>에서 접수된 건에 한한다. 다만,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)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④ 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<u>서울특별시 · 인천광역시 ·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</u>에서 접수된 건에 한한다. 다만,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)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4조(사무분장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별시를 제외한 지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